

■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[별표 2]

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일부 면제자의 제출서류(제25조 관련)

구분	제출서류
<p>1. 교통안전분야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</p> <p>가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대상자</p> <p>나. 학위취득자</p>	<p>1) 자격증 사본 1부</p> <p>2) 시험시행기관이 발행하는 과목합격증명서 1부</p> <p>3) 경력증명서 1부(국가자격증 소지자 중 실무경력이 필요한 자만 해당한다)</p> <p>1) 해당 학위과정 성적증명서 1부</p>
<p>2. 교통안전분야에 관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</p>	<p>1) 교통안전공단이 제2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한 교육·훈련과정 수료증 사본 1부</p>